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발 명 교 육 의 활 성 화 및 지 원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, 발명교육법)」이 개정(‘22.06.10 공포, ’22.12.11 시행 예정)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‘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, 절차, 유효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(법 제9조제7항)’, ‘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관리,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(법 제10조제5항)’을 반영하고, 그 밖에 발명교육법 신설·개정 조문 중 위탁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현행 업무의 위탁규정(시행령 제13조)에 반영하려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관리, 지도교사 운영”에 필요한 사항을 발명교육센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 관련 조문에 통합 규율(안 제7조 내지 제10조)
- 초·중·고 등에 설치·운영 중인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·관리하며, 전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발명교육 품질을 제고하고, 교육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임.
- 나.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·절차·유효기간 등을 신설(안 제11조 내지

제16조)

-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자를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발명교사 인증기준(인증의 등급과 요건), 심사방식, 절차 및 인증서 발급, 예비교원 인증, 유효기간, 재인증 등을 신설하여, 창의·융합형 발명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.

다.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업무를 시행령에 반영(안 제19조)

-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접수·평가시험의 실시 등 인증 업무,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·선도학교에 대한 업무 지원 등 발명교육 지원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.

라. 용어 수정 및 조문 번호 조정(안 제3조, 제17조, 제18조, 별지 1호 서식, 별지 2호 서식)

- 소속 학교를 관할 학교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며(제3조), 조문 신설(제11조 내지 제16조)에 따른 종래 조문 번호(제11조 및 제12조)를 조정(제17조 및 제18조)하기 위한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22. ~ 2022. 11. 1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소속”을 “관할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발명교육센터의 설치)”를 “(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발명교육센터(이하 “발명교육센터”)”를 “발명교육센터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(이하, “발명교육센터 등”이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지도교사”를 “운영조직 구성 및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”를 “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·운영과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)”을 “(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발명교육센터”를 각각 “발명교육센터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지도교사”를 “지도교사 등 운영인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발명교육센터”를 “발명교육센터 등”으로 한다.

5. 지식재산 전문가의 파견 지원

제9조의 제목 “(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)”를 “(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발명교육센터”를 “발명교육센터 등”으로, “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,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자격증(이하, “정교사 자격증”이라 한다)을 가진 전담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명교육센터”를 “발명교육센터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를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.
- ⑤ 발명교육센터 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발명교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·관리 등)”을 “(발명교육센터 등의 교육실적 자료 작성·관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발명교육센터를”을 “발명교육센터 등을”로, “발명교육센터에서”를 “발명교육센터 등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명교육센터를”을 “발명교육센터 등을”로, “발명교육센터에서”를 “발명교육센터 등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)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2급, 1급, 명인 등급으로 구분하며,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
2.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 및 실무경력을 갖출 것
3.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명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것

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(이하, “예비교원”이라 한다)으로서 제1항제2호의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춘 사람은 예비 발명교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예비 발명교사 인증은 2급에 한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(발명교사 인증심사) ① 발명교사 인증심사는 인증평가시험(이하, “평가시험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평가시험은 2급, 1급은 필기시험으로 하고,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3조(발명교사 인증의 절차)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1. 인증신청 접수기간, 접수방법
2. 평가시험의 일시,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
3. 합격자 발표일, 그 밖에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인증신청서 및 인증 등급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발명교육 이수실적, 발명교육 실무경력
2.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, 발명교육 강의실적, 연구·발명 실적
3.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사를 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

③ 특허청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.

1.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예비교원일 것
2.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

④ 특허청장은 평가시험 합격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등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4조(발명교사 예비인증) ① 특허청장은 예비교원이 제13조제3항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예비교원이 정

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에 의하여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.

제15조(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)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명인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6조(발명교사 재인증)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인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발명교육 이수실적, 발명교육 실무경력
 2.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, 발명교육 강의실적, 연구·발명 실적
 3. 그 밖에 특허청장이 재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재인증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부터 특허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특허청장은 재인증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재인증신청서 등 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9조(종전의 제13조)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발명교육센터**”를 “**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 및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**법 제12조제1항**”을 “**법 제12조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11조로

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”을 “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·재교육, 연구와 각종 활동 지원 및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 업무
7.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 등의 운영 지원
8.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
10.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보조 지원
11. 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
12.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 지원

부 칙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발명교사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재인증 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영의 시

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별지 서식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략)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	제3조(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 관할 ----- -----.
제7조(발명교육센터의 설치)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(이하 “발명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	제7조(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) ① ----- 발명교육센터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(이하, “발명교육센터 등”이)-----. ② -----
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지도교사</u> 확보 계획 6. ~ 8. (생략) 9. 그 밖에 <u>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</u>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(<u>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</u>) 특허청장은 <u>발명교육센터</u>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<u>발명교육센터의 설치·개선</u>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. <u>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</u> 필요한 비용의 지원 3. (생략) 4. <u>지도교사</u>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<신설> 5. 그 밖에 <u>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</u>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9조(<u>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</u>	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운영조직 구성 및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</u> ----- 6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<u>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·운영과</u> ----- ----- 제8조(<u>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 지원 등</u>) ----- <u>발명교육센터 등</u>----- -----. 1. <u>발명교육센터 등</u>----- ----- 2. <u>발명교육센터 등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도교사 등 운영인력</u>----- ----- 5. <u>지식재산 전문가의 파견 지원</u> 6. ----- <u>발명교육센터 등</u> ----- ----- 제9조(<u>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</u>
--	--

사)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,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(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·관리 등)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

교사) ① 발명교육센터 등-----

----- 자격증
(이하, “정교사 자격증”이라 한다)을 가진 전담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.

② 발명교육센터 등-----

-----.

③ 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를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.

⑤ 발명교육센터 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발명교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발명교육센터 등의 교육실적 자료 작성·관리 등) ① 발명교육센터 등 ----

----- 발명교육센터

선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터 등에서 -----

-----.

② 발명교육센터 등을 -----
-----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)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2급, 1급, 명인 등급으로 구분하며,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

2.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

수실적 및 실무경력을 갖추
것

3.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
는 기준에 따라 발명교육에
필요한 역량을 갖추 것

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
2항 별표 2 및 「초·중등교
육법」 제21조제2항 별표 2
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취득
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
(이하, “예비교원”이라 한다)
으로서 제1항제2호의 발명교
육 이수실적을 갖춘 사람은
예비 발명교사 인증을 받을
수 있다. 다만, 예비 발명교
사 인증은 2급에 한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
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
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
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(발명교사 인증심사) ①
발명교사 인증심사는 인증평
가시험(이하, “평가시험”이
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평가시험은 2급,
1급은 필기시험으로 하고,

<신 설>

<신 설>

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3조(발명교사 인증의 절차)

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1. 인증신청 접수기간, 접수 방법

2. 평가시험의 일시,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

3. 합격자 발표일, 그 밖에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인증신청서 및 인증 등급별 다음

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발명교육 이수실적, 발명
교육 실무경력

2.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,
발명교육 강의실적, 연구·
발명 실적

3.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
교사를 인증하는데 필요하
다고 고시하는 사항

③ 특허청장은 인증을 신청
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
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
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.

1.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
사람 또는 예비교원일 것

2.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
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
할 것

④ 특허청장은 평가시험 합
격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
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
인증신청서 등 인증의 절차
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4조(발명교사 예비인증) ①

특허청장은 예비교원이 제13조제3항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예비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에 의하여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.

제15조(발명교사 인증의 유효

기간)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명인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6조(발명교사 재인증) ①

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인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발명교육 이수실적, 발명

	<u>교육 실무경력</u> <u>2.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, 발명교육 강의실적, 연구·발명 실적</u> <u>3. 그 밖에 특허청장이 재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</u> <u>② 제1항의 재인증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부터 특허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</u> <u>③ 특허청장은 재인증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재인증신청서 등 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<u>제11조·제12조</u> (생략)	<u>제17조·제18조</u>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
<u>제13조</u> (업무의 위탁)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발명진흥	<u>제19조</u> 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

법」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·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

5.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

6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

<신설>

<신설>

7.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·재교육, 연구와 각종 활동 지원 및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발명교사인증 업무

5. -----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 및 -----

6. 법 제12조-----

7.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 등의 운영 지원

8.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

9. ----- 중소기업 등 -----

10.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보조 지원

<u>8.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</u> <u><신 설></u>	<u>11. 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</u> <u>12.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 지원</u>
---	--

부칙 및 별지서식 -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발명교사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재인증 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</u>
별지 제1호서식 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명교육 개발원의 []지정 []변경을 신청합니다.	별지 제1호서식 ----- ----- ---- 시행령 제17조제2항 ----- ----- -----
별지 제2호서식	별지 제2호서식

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<u>제11조</u>제6항 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합니다.	----- ----- ----- 시행령 <u>제17조</u>제6항 ----- -----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	
연 락 처	042-481-5187